

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

1. 계획 개요

□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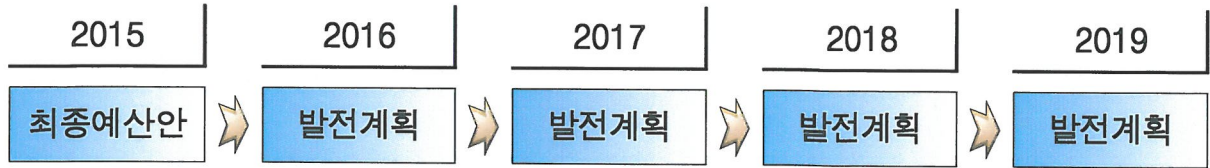
-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- 지방재정법 제36조(예산의 편성)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(투자사업비)

□ 성격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경제·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(Rolling Plan)으로 운영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- **재정의 효율적 운용방향 제시**
 -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 및 재정 여건 변동 등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 조정
 - 중·장기적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
- **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**
 -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시책 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
- **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**

□ 계획의 내용

○ 기 간 : 2015 ~ 2019년(5개년)



○ 범 위 :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
○ 수립기준

- '15년도 예산 :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15년도 최종 예산안
- '16년도 이후 : '1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

※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(최종예산 기준)와 의회제출(당초예산 기준)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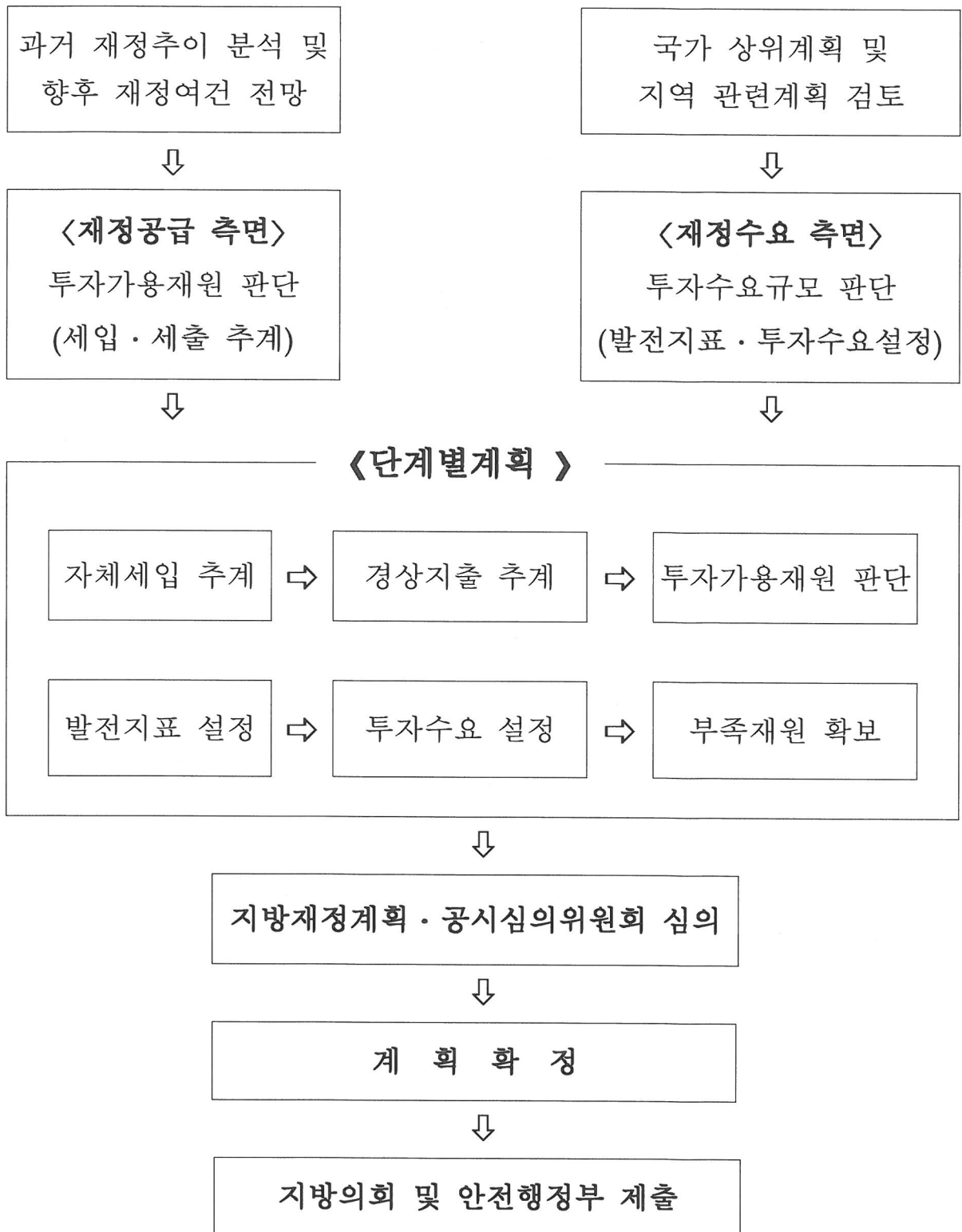
○ 수립대상 : 건당 총사업비 20억원(행사성 3억원) 이상 사업

※ 안전행정부 기준 : '14년 당초예산 3,0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(행사성 3억원) 이상 사업

○ 수립방법 :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

- 안전행정부 「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」('14.7)에 의한 계획 수립
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의거 관계 전문가 및 단체대표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·공시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 수립
- 재정투자 방향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('14.6.2~7.2, 인터넷 및 서면조사 병행) 결과 반영

□ 계획의 수립 체계



II. 기본 방향

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

수립 방향

- 『2015~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』 과 연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수립
-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합리적인 자원배분
- 재정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 제고 및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우리 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 수립
-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

※ 우리시 예산규모

